2022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2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이동건	910320-1091016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대출종류	차입금	1월	2월	3월	연 <u>간</u> 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	상품명	고정금리 차입금	4월	5월	6월		
	주택취득일/저당권설정일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7월	8월	9월		
	최초차입일/최종상환예정일 (상환기간)	당해년 원금상환액	10월	11월	12월		
한국주택금융공 사 (104-81-86269)	해당없음	99,700,000	0	0	218,383	- 1,758,266 -	1,758,266
	내집마련디딤돌대출	99,700,000	173,587	167,987	173,587		
	2022-02-14/2022-02-14	0	167,987	173,587	173,587		
	2022-02-14/2052-02-14 (30 년)	0	167,987	173,587	167,987		

- 1. 공제 대상 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일련번호: 20230208-1655815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